

수산물 업종 FTA 활용 기업 간담회 결과

-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국 총괄기획과(044-203-4124) -

1. 회의 개요

- (일시·장소) '19. 2. 13(수), 14:00~16:00 / aT센터(양재) 1103호
- (참석자) 산업부, 유관기관, 관련 수출기업 등 15명 내외
 - (산업부) 통상국내정책관(회의주재), 총괄기획과장, 담당 사무관 등
 - (유관기관) FTA종합지원센터, aT, 수산무역협회, 수협중앙회
 - (기업) 관련 수출기업(8개사) CEO·중견관리자 등

2. 주요 애로·건의사항

1 세번변경된 조미김에 대한 태국세관의 高상호대응세율 부과

- (애로사항) 조미김은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으로 조미김에 대한 WCO의 세번변경 결정*(17.9)에 따라 태국의 상호대응세율이 5% → 30%**로 급상
 - * 한국의 조미김 세번·세율 : (기존) 2106.90(기본8%, 협정5%) → (변경) 2008.99(기본45%, 협정36%)
 - * 태국의 조미김 세번·세율 : (기존) 2106.90(기본5%, 협정0%) → (변경) 2008.99(기본30%, 협정0%)
 - ** 민감품목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방식 : 수출국의 FTA협정세율이 10%를 초과할 경우 수입국의 MFN세율을 적용
- (조치사항) 제17차 한·아세안 FTA이행위('19.2.12~14) 시 태국측에 문제제기(기존 5% 세율적용)한 상황(FTA이행과)

2 국내산 어묵에 대한 태국세관의 관세 불이익 조치

- (애로사항) 태국으로 수출하는 어묵(1604.20.99, 우리측 민감품목)에 대해 상호대응세율(5%, 우리측 협정세율)이 적용되어야하나, 태국에서 기본세율(20%)을 적용
 - * 어묵 관세율 : (한국) 기본20%, 협정5%, (태국) 기본20%, 협정0%

- (조치사항) 관세청 면담, 한·아세안 FTA 이행위 등을 통해 문제 제기하고, 태측에 조속한 해결을 당부(FTA이행과)

3 對중국 수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중국측 HS코드 확인

- (애로사항) 중국으로 수출하는 명계 등 일부 수산물*에 대한 중국측 HS코드 확인이 어려워 수출에 지장 초래
 - * HS코드 확인불가 품목 : 명계, 냉장참조기, 냉장갈치 등 냉장(신선) 수산물
- (조치사항) 중국측 수산물 HS코드 확인 및 안내*
 - * (명계) 0308.90, (냉장 참조기, 갈치) 0302.89
 - 모든 수출입 물품은 물품의 성상에 따라 하나의 HS코드로 분류 하도록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있음
 - 향후 상대국 HS코드에 대한 문의는 관세청* or FTA종합지원센터 (☎1380), 상대국 소재 수출입업자 등을 통해 확인 가능
 - * (문의) 관세청 통관지원센터 ☎ 042-481-2197, 홈페이지 www.customs.go.kr

4 활어, 조미김 등 수출 검역·검사 제도개선

- (애로사항) 활어, 조미김 등에 대한 검역증명서를 매 수출시마다 제출하고 있으나, 고비용·검사지체* 등으로 수출 애로 → 검역비용 감액(활어), 검역 생략(조미김) 등 지원 요청
 - * 건당 20만원 소요, 수산물품질검사원의 인력부족·출장검사 등에 따른 시간지체
- (조치사항) 수출 검역·위생증명서는 상대국 요구사항으로, 검역 생략은 불가피하나 비용·기간*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(해수부)
 - * (현행) 정밀항목 당 1~5만원이며 최대 20만원 및 1주일 내외 검역기간 소요
 - 양식장 상시 질병관리를 통해 2년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양식 업체는 정밀→임상검사*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('19년 추진, '21년 적용예정)
 - * 표면적 증상에 대한 검사로 무상으로 진행하며 1일 소요
 - ※ (관련문의) 한국수산물품질검사원(☎ 051-400-5730)

5 수입 수산물 유입증가에 따른 국내 양식업계 피해 가중

- (애로사항) 연어·방어 수입량 증가로 국내산 광어 소비량 급감, 원가이하 판매 등 피해 급증 → 수입 연어에 대한 세이프가드(SG) 발동 등 무역구제조치 요청
- (조치사항) 조사결과, 연어 수입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입가격은 오히려 상승*하여, 세이프가드 발동요건**을 미충족(무역위)
 - * (수입량) 20,693톤('17) → 25,764톤('18), (톤당 수입가격) 11.7백만원('17) → 12.5백만원('18)
 - **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은 일반적으로 수입량 급증, 수입가격 인하 등으로 인한 국내생산품 가격 하락 등의 심각한 피해가 있어야 함
- 또한 광어와 함께 판매되는 우럭의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하여, 광어 소비량의 감소는 수입연어보다는 국산 광어의 공급과잉과 소비자 기호변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(해수부 의견)

6 식약처와 관세청 간 품목분류 상이

- (애로사항) 중국산 와사비 줄기(4mm 절단·냉동)에 대한 식약처와 관세청의 품목분류 해석이 상이*하여, 관세평가분류원에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상황
 - * 식약처는 '천연 향신료(0910)'로, 관세청은 '냉동식품(0710)'으로 분류
- (조치사항) 관세청은 관세율표 해석에 따라 동 제품을 냉동채소(0710.80.9000)로 분류, 동 심사의뢰 건은 관세청이 '19.1.28일자로 업체에 통보 완료
 - * 식약처의 해석(향신료)은 관세율표상의 법리해석이 아닌, 식약처의 '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'상 신고제품 구분란의 편의상 분류에 따른 해석일 것으로 사료

3. 향후 계획

- 관련부서(부처·기관)와 회의결과 공유 및 기업에 피드백 조치